



獸醫師 補修教育 制度의 活性化 方案

姜 英 培*

獸醫師 補修教育 制度의 活性化 方案을 거론하기에 앞서 教育의 基本概念이 바뀌고 있음을認識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成人教育 또는 平生教育이라는 命題下에서는 時代的, 社會的 变遷과 要求에 따라 教育이라는 意味가 단지 가르친다는 概念뿐만 아니라 첫째,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一次元的 注入過程으로부터, 둘째, 이미 알고 있는 바를 再確認시켜 주는二次元的 熟達過程 뿐만 아니라, 셋째, 이미 알고 있는 事項中 그릇되게 알고 있는 바를 바르게 고쳐주는三次元的 橋正過程까지를 포괄적으로意味하고 있음을認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獸醫師 補修教育의 目的과 必要性 또한 새롭고 빠르게 發展되고 있는 知識과 技術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補完의 意味, 알고는 있되 修練을 必要로 하는 技術分野에 對한 再訓練的 意味, 그리고 知識과 技術의 不足으로 因하여 發生될지도 모르는 現場事故에 對한 預防的 意味로 壓縮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制度나 規程의 施術에 있어서도 각各 長短點을 가지고 있음을 認定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우리나라 獸醫師의 地位方向과 권위 수립을 위하여 現行 獸醫師 補修教育 制度의 現況과 問題點을 함께 考察하여 보고 活性化를 위한 解決對策을 提案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獸醫師 補修教育에 關聯된 法의 근거를
*家畜衛生研究所

살펴보면, 獸醫師法(法律 第412號 1956. 12. 26制定, 法律 第3,441號 1981. 4. 13改定) 第31條 ①項에 “農水產部 長官은 獸醫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을 實施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同法 同條 ②項에는 “第①項의 教育에 必要한 경비는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있으며, 同法 第33條 ②項에는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農水產部 長官은 1年이내의 범위안에서 免許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이 規程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하여야 하는 義務事項이라기 보다는 可能事項일 뿐이며 또한 이 制度의 運營을 위한 施行令이나 施行規則上의 規定은 法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獸醫師法 施行規則(農林部令 第53號 1957. 6. 5制定, 農水產部令 第904號 1984. 1. 10改定) 第25條(公獸醫 준수사항) 5項에 “農水產部 長官, 道知事 또는 獸醫師會에서 實施하는 教育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規程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現行 規程上의 意味만을 適用한다면 補修教育의 被教育對象者는 〈公獸醫〉에만 限定되는 것이며, 獸醫師法 第2條 第1項에 定義된 〈獸醫師〉에 對한 一般見解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獸醫師 補修教育 現況을 살펴보면, 大韓獸醫師會 主管하에 1期당 1주일 이내의 期間을 설정하여 特定場所

(家畜衛生研究所 또는 서울大 獸醫大)를 빌려서 教育과 實習을 實施하며, 강사진에 있어서는 有關機關(農水產部, 家畜衛生研究所)과 大學으로부터 지명피촉하며, 被教育者 차출은 獸醫師會各市·道支部 또는 各市·道(獸醫科)別로 윤번체로 지명차출 하거나 教育 반기를 希望하는 獸醫師 중에서 선발하여 機會를 부여하고 있음으로 臨床獸醫師가 大部分으로 되어 있다. 교육 운영경비는 축산진흥기금에서 일정액의 補助를 받아 施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行制度와 운영방법을 참고로하여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活性化 方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現行 補修教育 制度上의 盲點을 지적할 수 있다. 어떠한 規程이든지 規程의 設定에 있어서 지나친 자유재량 행위의 許容은 本來의 規程意味를 無意味하게 만드는 結果를 超來하게 될 수 있으므로, 現行 獸醫師法의 規程을 義務事項으로 고치고 同 規程을 効果的으로 施行할 수 있도록 同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上에 條項을 明文化하여야 하며, 必要한 事項 즉, 教育予算, 教育過程 및 期間, 教育담당자 피촉規定, 被教育者 차출 또는 선발規定, 教育 이수자에 대한 資格認定 및 대우規定 등이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教育期間 設定과 資格認定 및 대우 問題가 지적될 수 있다. 現在 施行하고 있는 바와 같이 臨床 獸醫師를 中心으로 期別 5~6日間의 집체敎育만으로는 特殊한 資格을 認定할 수 없을 것이며 教育效果를 기대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얻는 效果보다 被教育者 業務上의 空白期만 만들어 주는 被害도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實제적인 補修education의 效果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大學 獸醫學過程(4年間) 이수 후 初任 獸醫師에 대하여 現地 취업 또는 研修(家畜病院 其他 유관기관)期間中 約2年 程度의 전문분야별 通信敎育을 實施하고 이수자에 대하여는 一定한 資格認定(Board certificate)과 함께 家畜病院 개설許可 또는 취업후의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이미 開業을 하고 있거나 취업해 있는 會員에 대하여는 一定期間(5年~10年) 現場敎驗을 거친 다음 2年程度의 通信敎育을 通하여 補修敎育을 實施하며 이수자에 對하여는 關련된 特殊分野의 전문수의사(Specialist 또는 Diploma) 資格을 認定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여기에서 通信敎育의 期間은 約2年으로 가정하였으나 個人의 能力과 여건에 따라 期間의 단축 또는 연장이 可能한 것이 長點으로 認定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教育過程 内容의 内實化 問題를 지적할 수 있다. 補修敎育의 教課設定에 있어서는 大學에서의 教育과 同一 또는 類似한 教科目에 대한 반복敎育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새롭고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 첨단기술과 발전하는 社會에 부응되는 전문화敎育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獸醫學이란 學問이 基本적으로 〈動物의 疾病〉에 關聯되어 있는 것인지만 실제로 獸醫業務의 범위는 臨床 獸醫學에 局限될 수 만은 없으며, 各樣各態의 基本 醫學分野로부터 食品衛生 및 傳染病 管理를 위한 公衆衛生分野, 國內 防疫 및 國際 檢疫分野, 動物藥品分野, 飼料衛生 및 牧場衛生 지도관리분야, 實驗動物醫學分野, 그리고 國家 및 地方組織의 獸醫行政分野 등 실로 광범위 하면서도 전문적 知識과 特殊技術을 必要로 하는 分野까지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獸醫師 補修敎育에 있어서는 各 전문분야별로 전문화敎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獸醫學者 養成보다도 有能한 獸醫業 전문가를 養成하여야 한다. 現行 우리나라의 獸醫學敎育制度상으로 볼 때 比較的 短期過程인 4年間의 教育이수 후 國家試驗으로 〈獸醫師〉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獸醫學 學問의 領域別로 各 分野의 碩士와 博士를 大學院에서 배출하고는 있으나, 實際로는 獸醫業務상의 臨床 各 分野의 전문獸醫師나 關聯된 各 應用分野의 전문가를 養成해 내는 制度의 장치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獸醫業務 分野의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獸醫師 補修教育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약점을補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다섯째, 教育運營 方法의 現實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短期間의 機會教育만 가지고는 效果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수자에 대한 能力과 資格을 認定하는데에 있어서도 問題가 있으므로 教育過程 및 期間상의 問題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事項은 運營方法의 現實化 問題이다. 現在 獸醫師 補修教育 以外에도 이미 免許를 받은 獸醫師에 대하여 所定의 特殊技術教育을 實施하고 육가공, 유가공 및 도계검사원 등 畜產物 自體 檢查員을 배출하여 유관업체에 취업을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必要하다면 獸醫師 補修教育의 일환으로 吸收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 獸醫師 補修教育의 수료증은 어떤 有利한 効力도 발휘하지 못함을 認識하여야 한다. 또

한, 教育運營經費에 있어서도 現行대로 國費 또는 공공기금에 의한 補助에만 의존하게 되면 發展을 기대하기도 곤란할 뿐 아니라 教育運營 自體가 허약체질화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教育運營을 위한 基本的 經費는 국고 또는 공공기금의 補助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其他 모든 經費는 수혜자(피교육자 또는 의뢰업체 등) 부담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大韓獸醫師會가 우리나라 全體 獸醫師의, 獸醫師에 의한, 獸醫師를 위한 最高代表機關으로 活動하며, 有關 各 學會 및 業界를 장악하고 산하에 各 전문단체(美國式表現으로는 Board)를 結成하여 效果的으로 運營할 수 있을 때, 各 會員 모두가 獸醫師로서의 권위와 자부심을 느끼며 獸醫學 및 獸醫業務의 진정한 發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料된다. 또한 꼭 그렇게 될 것을 간절히 바란다.

— 신간안내 —

小動物臨床放射線診斷學

Jerry M. Owens 著

成 在 基 譯

發 行 1986年 4月 10日

定 價 7,500원

發行處 先進文化社

문의처 대한수의사회